

건강한 국민, 신뢰받는 병원,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 합니다.



사단
법인

대한병원협회



수 신 전국 병원장
참 조 보험(원무)부서장
제 목 보건복지부 고시 일부 개정 안내(선별급여, 세부사항, 상대가치점수)

1. 관련 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56, 58, 59호(2024.3.28.)

2. 보건복지부는 「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-50호, 2024.3.14.),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45호, 2024.3.8.) 및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51호, 2024.3.20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하여 안내합니다.

가. 고시 제2024-56호(선별급여)

- 'ABLATION GUIDING CATHETER(GUIDE WIRE 포함, STEERABLE TYPE)'의 적합성 평가에 따른 평가주기 및 적용일 변경

나. 고시 제2024-58호(세부사항)

-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[1일당] 급여기준 신설
- F-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등 급여기준 개정
- 건강검진 실시 당일 이상소견이 있어 2가지 이상의 수술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신설

다. 고시 제2024-59호(상대가치점수)

- 행위 급여목록 재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및 수가코드 변경사항 등 질병군 급여항목에 반영

붙임 : 고시 제2024-56호(고시 개정문 및 전문), 고시 제2024-58, 59호(고시 개정문) 각 1부.

※ 붙임자료 다운로드 : 본회 홈페이지(www.kha.or.kr) / 협회업무 / 보험국 공지사항. 끝.

대한병원협회장



사원 김승재 제2국장 정교숙 제1국장 류향수

시행:보험 제 2024-120 (2024.03.29)

우편번호 04165서울 마포구 마포동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

홈페이지 : www.kha.or.kr

전화 02-705-9256 전송 02-705-9209 (대표FAX: 02-705-9209) E-mail : sjkim@kha.or.kr